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무원·교원 등에 대해 후원회 가입 허용 >
■ 김성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63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무원·교원 등에 대해 후원회 가입 허용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회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7. 17.
3. 회 부 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미국·일본·프랑스·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1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공무원·교원 등에 대해 후원회 가입 허용(안 제8조제1항 등)

개정안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대표발의, 2024. 7. 17., 의안번호 제1861호)이 발의됨에 따라 누구든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정당법」¹⁾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안) 주요 내용>

내 용	현행 「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안)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가입 가능 연령 (제22조제1항)	16세 이상	제한 없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제22조제1항 제1호~제4호)	국가·지방공무원(단, 정무직공무원 등은 제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 분을 가진 자 「공직선거법」 ²⁾ 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삭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제22조제2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좌동

1)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

현행	개정안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누구든지 자 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 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 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 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략)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 ----- -----. ----- -- 「정당법」 제22조제2항----- ----- ----- -----.
제22조(기탁금의 기탁) ① 기탁금을	제22조(기탁금의 기탁) ① -----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2)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効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기탁하고자 하는 <u>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u>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기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u>개인</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한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대표발의, 2024. 7. 17., 의안번호 제1861호)과의 병합·심사와 관련하여 현행 「정치자금법」은 이미 제3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외국인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

이에,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대표발의, 2024. 7. 17., 의안번호 제1861호)의 입법에 맞추어 개정안의 입법을 고려할 경우 「정당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 제8조제1항의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후원회 가입 허용 여부는 공무원 등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공무원 등의 후원회 가입 허용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하고, 공무원의 후원회 회원 가입을 허용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과의 관계 논의 및 법령의 추가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